| 의안번호 | 제 88 호 |
|---|---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10년 12월 일<br>(제296회) |

#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발 의 자 | 윤성옥 의원 외 6명 |
|---|---|
| 발의연월일 | 2010년 11월 30일 |

#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**(윤성옥의원 대표발의)**

| 의안 번호 | 88 |
|---|---|

발의연월일 : 2010년 11월 30일
발 의 자 : 윤성옥·김봉회·김종필·정 헌·황규철·박문희·김희수 의원(7명)

1. **제안 이유**

○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되는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과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.

2. **주요 내용**

가. 조례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(안 제1조~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7조 등)

3. **조례안 :** 붙 임

4. **관계법령 발췌 :** 붙 임

5. **예산조치 :** 해당사항 없음

6. **관련부서 협의 :** 농정국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

7. **입법예고사항**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되는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에 임산물,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위탁자"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(이하 "위탁신청서"라 한다)을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(이하 "연구소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신청서의 검토결과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,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 후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탁자 이외의 자가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에 의뢰하는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**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되는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** |
| 제2조(시험 및 감정위탁 등) ① 연구소에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위탁자"라 한다)는 이 조례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위탁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(이하 "연구소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 제2조(시험 및 감정위탁 등) ① **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에 임산물·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위탁자"라 한다)는 별지 제호서식(이하 "위탁신청서"라 한다)을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(이하 "연구소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**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3조(수탁의 거부) ①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서의 검토결과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,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다. | 제3조(수탁의 거부) **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신청서의 검토결과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,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다.**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제5조(시험성적서) ① 연구소장은 임업시험 및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| 제5조(시험성적서) **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** |
|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성적서 교부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뢰인 이외의 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| **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 후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탁자 이외의 자가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**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7조(공시종자의 봉함) ① (생 략) | 제7조(공시종자의 봉함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위탁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. | **②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.** |

[별지 제1호서식]

<table>
<tr><td rowspan="5">임업에 관한</td><td rowspan="2">□ 실내</td><td>□ 시험</td><td rowspan="5">위탁신청서</td><td colspan="2">처 리 기 간</td></tr>
<tr><td>□ 분석</td><td>시 험</td><td>100일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□ 현지</td><td>□ 조사</td><td>분 석</td><td>25일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□ 감정</td><td>조 사</td><td>15일</td></tr>
<tr><td>감 정</td><td>30일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신 청 인<br>(법인은<br>대표자성명)</td><td colspan="2">①성 명</td><td></td><td>②주민등록<br>번 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③주 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7">위<br>탁<br>내<br>용</td><td colspan="2">④공시품명 또는<br>조 사 사 항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⑤수 량 또 는<br>조 사 면 적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⑥생산지(제조지)<br>또는 조사지역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⑦채 취 연 월 일</td><td></td><td>⑧채취방법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⑨위 탁 사 항</td><td></td><td>⑩봉 함</td><td>유□ 무□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⑪목 적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br>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br><br>년 월 일<br><br>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·무인)<br><br>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○ 구비서류 : 임야도(1:6,000) 1부(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)<br>○ 공 시 품 :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<br>규정에 의한 수량</td><td>수수료<br><br>산림청고시<br>참 조</td></tr>
</table>

[별지 제2호서식]

<table>
<tr><td colspan="6">발급번호 제 호<br><br>임업에 관한 □ 시험 □ 분석 □ 조사 □ 감정 성적서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신청인</td><td>① 성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②주민등록 번 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③ 주 소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8">결과내용</td><td>④ 공시 품명 또는 조 사 사 항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⑤ 수량 또는 조사면적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⑥ 생산지(제조지) 또는 조사지역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⑦ 채 취 연 월 일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⑧ 내 용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⑨ 방 법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⑩ 성 적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<br>년 월 일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( )성적을<br>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<br><br>년 월 일<br><br>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 ㊞</td></tr>
</table>

[별지제3호서식]

<table>
<tr><td colspan="3">임업에 관한 □ 시험 □ 분석 □ 조사 □ 감정 성적서 교부신청서</td><td colspan="2">처 리 기 간<br>즉 시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신청인</td><td>① 성 명</td><td></td><td>②주민등록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③ 주 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신청내용</td><td>④ 공시품명 또는 조 사 사 항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⑤ 성적발급번호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⑥ 사 용 목 적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⑦ 소 요 량</td><td colspan="3">국문 통 영문 통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<br>위와 같이 년 월 일자로 통보받은 ( )성적에 대한<br>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신청합니다.<br><br>년 월 일<br><br>신 청 인 (서명 또는 날인·무인)<br><br>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구비서류 : 의뢰인의 동의서 1부(의뢰인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)</td><td>수수료<br>산림청고시 참 조</td></tr>
</table>

# 관 계 법 령

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